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3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이개호 · 채현일 · 박수현
황명선 · 정진욱 · 곽상언
위성곤 · 조계원 · 최혁진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조 5,323억원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업은 이에 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간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나,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활동지원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5. 활동지원인력의 수급·양성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립한 기본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

려야 한다.

제3조의4(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활동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활동지원위원회(이하 “활동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 관련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원인력의 적정공급에 관한 사항
4. 근로조건·처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제4조의3(활동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활동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활동지원인력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5. 장애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4(활동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활동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활동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활동지원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활동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3(활동지원 기본계획) ①</u> <u>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u> <u>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u> <u>하여 제4조의2에 따른 활동지</u> <u>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u> <u>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u> <u>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u> <u>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u> <u>행하여야 한다.</u> <u>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u> <u>관한 사항</u> <u>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u> <u>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u> <u>3.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는 수</u> <u>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u> <u>4.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u> <u>력 관리에 관한 사항</u> <u>5. 활동지원인력의 수급·양성</u> <u>및 처우에 관한 사항</u> <u>6.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과 관</u> <u>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사항</u> <u>② 기본계획은 「장애인복지</u>

<신 설>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립한 기본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의4(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
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
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4. 그 밖에 이 법 시행과 관련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요 사항

<신 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조의2(활동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활동지원위원회(이하
“활동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신 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 관련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원인력의 적정공급에 관한 사항
4. 근로조건·처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제4조의3(활동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활동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활동지원인력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

<신 설>

랍

5. 장애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4(활동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활동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활동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활동지원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활동지원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u>④ 그 밖에 활동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u>시·도지사</u>-----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